

입 안 서

1. 내규 제명 :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운영 지침

2. 제안이유

□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 훈격에 걸맞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 농장경영자 선정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명칭)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최종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명칭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구성·운영) 위원 구성 방법, 선임, 제척, 해임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지침 제정을 통한 운영계획 및 심사기준 수립 정례화,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최소화

* (심사기준) 축종별 기준 누리집 공표 시기 통일 필요('22.4월, '23.3월, '24.5월)

* (운영절차) ① 운영 계획 수립에서 수상자 선정까지의 운영 절차 명시 등,
② 상장 교부를 위한 상위기관 제출자료 및 기한, 결과 보고 등의 절차 명시

3. 주요내용

가.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마련,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지침 운영 목적
제2조(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제3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 외에 적용되는 규정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선정 조건,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소집·개회·의결 등에 관한 사항, 간사의 지정 등
제7조(위원 제척·회피)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에 관한 기준 규정
제8조(위원 해임)	위원의 해임에 관한 기준 규정
제9조(위원 교육)	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 계획 수립)	연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사 기준 마련)	심사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사 대상 기간)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 정의
제13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 축종 정의
제14조(점수 산출)	축종별 점수 산출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현장실사 농장경영자 선정 및 확인서 확정)	현장실사 농장경영자 선정 및 확인서 확정에 관한 사항
제16조(현장실사)	현장실사 점검 항목 명시, 이해충돌방지 조치 의무 규정
제17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수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제시
제18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상장 및 상패 교부)	상장 및 상패 교부 주체, 시기, 방법
제21조(결과 제출 및 평가)	시상 결과 보고 기한 및 근거 제시
제22조(수당)	선정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근거 규정
제23조(비밀 유지)	위원의 심의사항 비밀 유지 의무 규정

4. 참고사항

- 참고자료: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국립종자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규정」

5. 시행일 : 2025. 00. 00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운영 지침 제정(안)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이란 축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장경영자를 선정·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축종”이란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시상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로 한우, 한돈, 육우, 계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이하 “품질평가대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2. 「정부 표창 규정」
3.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제2장 선정심사위원회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품질평가대상의 운영방향 및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심사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사 농장경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품질평가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선정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본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5항제3호의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선정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1. 축산 관련 기관·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소비자단체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7조(위원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사 기준 마련과 수상자 선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해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단체 추천을 받아 보충한다.

제9조(위원 교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들의 품질평가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평가제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교육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품질평가대상의 운영

제10조(운영 계획 수립) 담당부서의 장은 품질평가대상 제도 운영을 위해 연간 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기준 마련) ① 위원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심사 대상, 심사 방법을 정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 대상 기간)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하 “심사 대상 기간”)은 직전연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은 축종별 개인 농장경영자로 한다. 다만, 계란 부문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점수 산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대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점수 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에게 축종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별 데이터 발굴 분석 및 통계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2.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축종별 사육·도축·유통단계별 이력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해당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심사 기준의 축종별 배점을 근거로 점수를 산출한다.

제15조(현장실사 농장경영자 선정 및 확인서 확정) ① 위원회는 심사 대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수상자의 2배수 이내에서 현장실사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선정 대상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현장실사 농장경영자 선정 시 수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확인서 및 농장단계 점검표 양식을 확정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할 지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농장경영자의 농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2. 사육현황(사육규모, 사육형태, 축사 면적 등)
3. 농장 현황 및 관리방법(농장명, 농장 주소 등)
4. 사육 특성
5. 감점 항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실사 확인서의 내용

② 관할 지원의 장은 관할 직원이 현장실사 농장경영자의 농장을 점검할 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수상자 선정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수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원의 장은 현장실사를 수행할 때 농장경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를 받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수와 제16조제1항의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별표 1에 따라 시상의 훈격을 결정한다.

②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 2의 축종별 수상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③ 농장경영자가 2개 이상 부문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높은 훈격의 1개 부문만 시상한다.

④ 현장실사 결과 별표 3에 해당하는 농장경영자는 수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⑤ 수상자 선정 결과는 시상식 개최 21일 전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심사 기준에 따라 기본 심사 자격을 통과

한 농장경영자는 수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게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축산
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된 이의신청
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당
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차례만 접수하며, 단순
한 불만이나 주관적인 의견은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0조(상장 및 상패 교부) 담당부서의 장은 대통령상·국무총리
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대한 상장 교부를 위하여 시상계획
서 및 심사계획서를 시상식 개최 30일 전까지, 수상자의 인적사
항을 시상식 개최 15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1조(결과 보고 및 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정부포상 업무지
침」에 따라 시상 결과를 시상식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 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상훈격 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시상훈격 기준

구분	내용
대통령상	한우와 한돈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수상한 부문은 당해연도에 선정할 수 없다.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을 제외한 한우와 한돈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제외한 한우, 한돈, 육우, 계란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제외한 한우, 한돈, 육우, 계란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협회장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제외한 한우, 한돈, 육우, 계란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농장경영자를 선정한다.

비고 :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상 부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별표 2] 동점자 발생 시 축종별 수상자 선정 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동점 발생 시 축종별 수상자 선정 기준

구분	축종별 수상자 선정 기준
한우	① 평균 사육개월령 낮은 농장경영자 → ② 이력제 준수 정도 감점이 낮은 농장경영자 → ③ 자가생산 비율 가점이 높은 농장경영자
한돈	① 등지방두께 표준편차가 작은 농장경영자 → ② 도체중 표준편차가 작은 농장경영자 * 출하 도체의 규격화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수상자 선별
육우	① 평균 사육개월령이 낮은 농장경영자 → ② 이력제 준수 정도 감점이 낮은 농장경영자
계란	① 파각란 출현율이 낮은 농장경영자 → ② 오염란 출현율이 낮은 농장경영자

비고

1. “이력제 준수 정도”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심사 기준 중의 하나로 이력제 신고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2. “자가생산”이란 한우의 사육부터 도축까지를 1개 농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3] 수상자 선정 취소

(제18조제4항 관련)

수상자 선정 취소

구분	내용
사육 축종 전환	심사 기간 중 사육 축종을 전환하여 더 이상 해당 축종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
종사 분야 전환	농장을 폐업하거나, 종사 분야를 전환하여 해당 축종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동일 농장에서 가족 명의로 출하한 경우 * 사육 장소가 다르고 사육 및 입·출하 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대상 농장경영자로 인정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서 ‘시상제외’ 점수를 부여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제17조제2항 관련)

초상 이용 동의서

본인 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저작물 및 개인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주관기관이 해당 사업 운영, 홍보 등의 목적으로 주관기관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 농장경영자 인터뷰에서 얻어진 초상·음성
- 수집·이용 목적 : 기관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저작물 일체에 활용
- 보유·이용 기간 : 홍보 종료 시까지
- 배포 범위 : 기관 누리집, 사보, 온·오프라인 저작물, 보도자료, SNS
- 사용료 : 없음

※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편집 및 후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자는 초상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물 제작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초상권 이용·공개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제17조제2항 관련)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수상자 선정 및 우수 사례집 제작	<u>3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상자 선정 및 우수 사례집 제작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시상금 지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14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근거	보유·이용기간
<u>행정안전부,</u> <u>농림축산식품부</u>	<u>공적조서 작성</u>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제5조	<u>영구</u>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

이의신청서

성 명		농 장 명		축 종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이 의 신 청 내 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상 결과 게시일로부터 48시간 내의 이의신청 건만 접수 - 신청자 정보는 누락 없이 반드시 모두 기재 필요 - 수상자 선정에 관련한 이의신청만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수상자 선정과 무관한 단순 질의사항이나 불만 등 주관적인 의견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서(자필 서명 필요) 스캔본(PDF 또는 JPG)을 제출				

위와 같이 수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제23조 관련)

위원 서약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무실			
	자택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AX	

위 본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위원직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일 일

소속 :

성명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